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1,273,737	22,538,212
일반회계	644,848,685	19,345,461
특별회계	106,425,052	3,192,752
기타특별회계	106,425,052	3,192,75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70,403	191,11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77,759,696	2,332,791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10,573	21,31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1,017,413	30,52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2,689	5,181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224,600	156,73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40,000	19,20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4,529,678	435,8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